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2일 23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여성가족과	3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	3
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

2017.07.04 조회수 234 등록자 박재원
10:40

- ✓ **민원사무명** **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**

- ✓ **민원내용**

다음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 1.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
 2.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 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- ✓ **관계법령** **청소년 보호법**

- ✓ **구비서류**

-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(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)
※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제출

- ✓ **처리부서** **여성가족과**

- ✓ **협의부서**

- ✓ **접수** **여성가족과**

- ✓ **수수료** **없음**

- ✓ **처리기간** **신청일부터 7일 이내**

- ✓ **기타사항**

- ✓ **흐름도**

- ✓ **기타참고사항**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